

2005. 4. 29. 10:00
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조 례 안 심 사 보 고 서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|
| 1.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————— | 1 |
| 2. 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| — | 3 |
| 3.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| — | 6 |

의회 운영 위원회

〔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〕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05. 4. 21.
- 나. 발 의 자 : 정화석 의원 외 6인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상정일자 : 2005. 4. 28
- 마. 의안번호 : 제2005 - 18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상임위원회의 소관업무 중 부적합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중 수송대관리사무소를 삭제함(안 제3조 2항 3호 가목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“하부행정기관의 장,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실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”로 규정.
- 수승대 관광지 사업소장은 「거창군 사무분장규정」 및 「거창군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배정 규정」에 의거 지방행정주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, 「거창군행정기구 설치조례」에 의거 문화관광과장이 관련업무를 지휘·감독하고 있으므로, 개정안과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없음”

7. 심사결과 : “원안가결”

-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본청 실·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수승대관리사무소장은 6급을 사업소장으로 보하고 있고 그 업무를 문화관광과장이 지휘·감독하고 있어,
- 본 조례의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‘수승대관리사무소’ 를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의 형식이나 내용절차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음.

8. 소수의원 요지 : “생략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

[거창군의회 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05. 4. 21.
- 나. 발 의 자 : 정화석 의원 외 8인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상정일자 : 2005. 4. 28
- 리. 의안번호 : 제2005 - 19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이 2005.1.27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
- 「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법의 정례회,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의 정

례회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3조)

- 현행 제2차 정례회일(12월 5일)을 10일간 앞당겨 11월 25일로 함(안 제4조)
-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안건을 심의·의결토록 명시된 것을 삭제하고,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·의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에서 규정에 따라, 「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기를 35일 이내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
- 2005년 1월 27일 「지방자치법」을 개정하면서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의기간 제한을 삭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문제가 없고,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지 않는 등 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없음”

7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차 정례회시 실시토록 하고 있는 동 조례를 1차 또는 2차 정례회 중 실시하도록 하고, 매년 제2차 정례회를 12월 5일에서 11월 25일로 10일간 앞당겨 집회하는 개정안으로,
- 조례의 체제나 내용 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

[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

[심 사 보 고 서]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05. 4. 21.
- 나. 발 의 자 : 정화석 의원 외 6인
- 다. 회부일자 : 2005. 4. 25.
- 라. 상정일자 : 2005. 4. 28
- 라. 의안번호 : 제2005 - 20호

2.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개정이유

-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차 정례회기간 중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매년 1차 또는 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현행 “매년 1차 정례회”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,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1차 또는 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“매년 정례회”로 개정함(안 제2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회기를 정례회 35일과 임시회 15일을 폐지하고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 및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등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 요지 : “생략”

6. 수정안 요지 : “해당없음”

7. 심사결과 : “원안 가결”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매년 ‘제1차 정례회’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‘제1차’를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,
- 조례의 체제나 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 가결하였습니다.

8. 소수의견 요지 : “생략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생략”